

수원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5094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전수려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3. C

4. D

변론 종결 2023. 3. 21.

판결 선고 2023. 5. 2.

주 문

1.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 사업의 표시 기재 사업에 관하여 2021. 6. 5. 체결된 교환, 양도양수계약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3. 체결된 교환계약을 각 119,001,6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19,001,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E 사이에 2021. 7.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D와 E 사이에 2021.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5.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50,500,0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096,26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596,268원으로 각 경정한다.

6.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4항.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2021. 1. 7. 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43,777,723원을 0원으로, 2021. 3. 15. 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금43,331,22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108,952원으로 각 경정한다.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096,26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4,096,26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한정한다)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별지 사업의 표시 기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보증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E이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과 보증기간은 최종 변경된 것이다)을 체결하였다.

제1약정	2018. 9. 28.	I은행	94,500,000	2018. 9. 28. ~ 2021. 9. 24.
제2약정	2020. 6. 4.	J은행	9,500,000	2020. 6. 4. ~ 2025. 6. 4.

나. E은 2018. 9. 28.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I은행에 제출하고 120,000,000원을, 2020. 6. 4.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J은행에 제출하고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E은 2021. 6.경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21. 7. 19. 실질적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1. 10. 14. I은행에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90,941,423원을, 2021. 9. 17. J은행에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9,571,46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89,010원이고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비용 잔액은 2,409,990원이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이행한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2021. 12. 1.자 2021차전15345 지급명령(E은 원고에게 103,116,287원(독촉절차비용 104,400원 포함) 및 그중 9,571,464원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90,941,423원에 대하여 2021. 10. 14.부터 각 2022. 2. 2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2021. 12. 1. 확정되었다.

마. 피고 A은 E과 사이에 2021. 6. 5.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E에게 686,236,000원을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6. 23.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일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7. 1. 접수 제106497호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1. 12. 접수 제423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2021. 3.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4037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사.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2021. 11.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G,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제1경매'라고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23. 2.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43,777,723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43,331,22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1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B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2. 24. 피고 B에 대한 위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2023. 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청구금액 99,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4362)이 있었고, 2021. 7. 27. 그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교환계약, 제1, 2근저당계약 당시 E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시가 1,830,004,360원 상당, K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채권 26,745,121원, L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채권 2,179,228원 합계 1,858,928,70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별지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 당시인 2021. 1. 7.경 합계 1,851,769,274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교환계약, 제2근저당계약 당시인 2021. 3. 15.경 이후 합계 1,882,579,163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8,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2, 3, 제17호증의 2, 3, 4, 6, 제19, 21, 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8, 제31, 33, 34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4, 제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교환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교환계약의 취소와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21.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액은 119,001,642원[= 원금 103,011,887원 + 지연손해금 15,885,355원{= 9,571,464원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2022. 2. 25.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9,852원 + 90,941,423원에 대하여 2021. 10. 14.부터 2022. 2. 25.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90,869원 + 100,512,887원(= 9,571,464원 + 90,941,423원)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2023. 3. 2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854,634원} + 독촉절차비용 104,400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2,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 전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주식회사 J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소멸된 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시가 1,333,808,520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시가 1,327,301,520원인 사실, 주식회사 J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은 262,521,528원[= 1,327,301,520원 - 1,064,779,992원(= 1,070,000,000원(= 1,020,000,000원 + 50,000,000원) × 1,327,301,520원 / 1,333,808,520원, 원 미만 버림)]임을 알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J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만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제외하여 책임재산을 산정하였으나 사해행위인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J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책임재산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제외하여 책임재산을 산정한다].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구상채권액 119,001,642원이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 262,521,528원보다 적으므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교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교환계약을 119,001,6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119,001,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로서 43,777,723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제1배당표가 작성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3,777,72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3,777,72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E의 적극재산 중 K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채권 26,745,121원은 실지급액인 11,332,354원만 인정되어야 하고, ② 별지 채무내역표 순번 1 M은행에 대한 채무는 180,000,000원으로, 순번 2 M은행에 대한 채무는 70,000,000원으로 각 인정되어야 하며, ③ L에 대한 채무 3,632,000원,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채무 15,521,510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20,567,245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급액은 환급금에서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고, E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E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 당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에 대한 채무 3,632,000원은 별지 채무내역표 순번 5 기재 채무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3,632,000원이 별지 채무내역표 순번 5 기재 채무와 별개의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8호증의 1,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의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채무 15,521,510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20,567,245원이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 당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1근저당계약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의 취소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①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은 E이 종전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N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의 대주주인 피고 B과 사이에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E이 H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 552,305,165원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③ 피고 B은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은 E이 종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N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E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것도 아니고 종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N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법리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권설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2, 을나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주장하는 E의 매출채권이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N는 E에게 수년 전부터 원자재를 공급해 온 사실, 피고 B은 주식회사 N의 대주주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 이후 주식회사 N가 지속적으로 E에게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 E은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와 사이에 2019. 9. 27.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1. 주식회사 N를 근저당권자로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2021. 7. 22.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B이 2021. 8. 18. 경매신청을 취한 사실, E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H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당기순이익이 104,534,9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N의 신청에 따라 2021. 7. 19. 이 사건 제2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주식회사 N에 대한 매입채무액이 2021. 1.경부터 증가한 점, E의 주식회사 N에 대한 매입채무액이 2020. 12. 31. 기준 163,860,000원인데 E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E(H)의 2020. 12. 31. 기준 유동부채 총액이 142,582,146원에 불과하여

E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은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 N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배당표의 경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의 진행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피고 B에게 43,331,229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3,331,229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3,331,22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의 대상 부동산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인 사실, 이 사건 제1배당표의 피고 B에 대한 배당 중 43,777,723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43,331,229원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각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의 대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경매 개시결정 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의 대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배당된 돈을 원고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라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배당된 돈을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사실 및 아래 각 사실은 피고 C, D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 C은 E과 사이에 2021. 7. 7.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7. 13. 접수 제11191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D는 E과 사이에 2021. 7. 9.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7. 13. 접수 제11191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N의 신청에 따라 2021. 7. 19.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F,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제2경매'라고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경매 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22. 12. 20. 이 사건 제3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14,096,26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2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C, D의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2. 12. 22. 피고 C, D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2022. 12.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제4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청구금액 99,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4362)이 있었고, 2021. 7. 27. 그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제2경매 절차(배당요구 종기 2021. 9. 29.)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5) 이 사건 제3, 4근저당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시가 1,830,004,360원 상당, K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채권 11,332,354원, L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채권 2,179,228원 합계 1,843,515,942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별지 채무내역표의 채무액 중 자백 간주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21,909,918원이 있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3, 4근저당계약의 취소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근저당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2배당표의 경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3, 4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제2경매 절차의 진행으로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피고 D에게 14,096,26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과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096,268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64,096,26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C, D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인데 원고가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인 99,500,000원을 넘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50,500,000원(= 150,000,000원 - 99,500,0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096,26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596,268원으로 각 경정한다(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정업

별지